

소규모 합병 공고

당사는 2026년 7월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동아제약(주)를 소규모 합병(상법 제527조의3) 방식으로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2026년 7월 27일 동아제약(주)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동아쏘시오홀딩스(주)가 동아제약(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동아제약(주) = 1 : 0
3. 합병 당사회사의 현황

구분	존속회사	소멸회사
상호	동아쏘시오홀딩스(주)	동아제약(주)
본점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용두동)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용두동)

4. 합병기일 : 2026년 10월 1일
5. 동아쏘시오홀딩스(주)와 동아제약(주) 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가. 행사절차 : 2026년 8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 나. 제출기간 : 2026년 08월 10일 ~ 2026년 08월 24일
 -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6년 08월 24일까지 동아쏘시오홀딩스(주) 재무전략팀에 제출(☎02-920-8183)
 - 2) 일반계좌(실질)주주: 2026년 08월 21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증권회사 별 제출방식 및 제출기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 및 기한은 각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 마.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6년 08월 10일

동아쏘시오홀딩스(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대표이사 김민영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동아쏘시오홀딩스(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동아쏘시오홀딩스(주)와 동아제약(주)의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6년 8월 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